

# 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7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2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(2011.1.1)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,
-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재정 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중 행사성 사업 하한 기준액을 5억원 이 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개정함.(안 제2조제1항)
- 나. 정기 투자심사 절차를 매년 2회에서 매년 3회로 확대(안 제5조제2항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.

## 개정조례안 : 불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1항
-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1. 11. ~ 1. 30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(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)

# 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제2항 및 제7조 중 “대하여는”을 각각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제2조 제1항제2호 중 “5억 원 이상”을 “3억 원 이상”으로 하며, 제9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매년 상반기와 하반기”를 “매년 3회”로, “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”를 “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,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,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권 오 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경영평가담당 최 석 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조 경 래 (행정 2793)

